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공 직 자 윤 리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고위공직자의 주식 보유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방지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법률 제17754호, 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됨에 따라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절차를 마련하고 주식 관련 의무이행 지연 등에 대한 제재 절차를 정비하는 등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주식관련 의무이행 지연 등에 대한 제재 절차 정비(안 제15조, 제19조제2항제3호 신설)

- 1) 주식관련 의무이행 지연 등에 대한 징계의결의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
- 2) 주식관련 징계의결 요구, 과태료 부과 사항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

나.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정비 및 위원 자격요건 구체화(안 제16조제1항,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4호 신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 2명을 증원하고,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화

다.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절차 마련(안 제27조의6제1항 및 제2항 신설)

1)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시 등록기관의 장에게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되, 인사혁신처가 등록기관인 공개대상자의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을 거쳐 등록기관으로 심사청구서를 제출

2) 등록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기한 내에 심사청구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서를 이송

라. 주식 관련 연차보고서 작성사항 구체화(안 제36조제1항제1호, 제2항)

연차보고서 작성사항에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의 관리 등에 관한 현황과 운영실태 포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검찰청”을 “수사기관”으로 한다.

제15조 중 “법 제8조의2제2항제4호 및”을 “법 제8조의2제2항제4호, 제14조의5제11항 및”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7명의 위원은 법 제9조제3항 본문”을 “9명의 위원은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사회적 신망이 높고 인사·윤리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제19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14조의5제11항에 따른 조치

제2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대통령경호처 차장

제27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6(직무관련성 심사청구) ① 공개대상자등이 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라 심사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등록기관의 장을 거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의 부·처·청 소속 공무원과 감사원·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으로서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하는 공직자는 소속기관의 장을,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으로서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하는 공직자는 그 공직유관단체를 감독하는 부·처·청을 거쳐 인사혁신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기한 내에 심사청구를 하였는지 여부
2. 심사청구 대상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36조제1항제1호 중 “행위제한”을 “행위제한,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의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재산등록 및”을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으로 한다.

별표 1의2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공무원란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및 그 퇴직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4조제3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등록의무자 · 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① · ② (생 략)	제11조(등록의무자 · 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① · ② (현행과 같 음)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출석 요구를 2회 이상 받은 사람이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하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관할 <u>검찰청</u> 에 고발할 수 있다.	③ ----- ----- ----- ----- <u>수사기</u> <u>관</u> -----.
제15조(징계의결요구 등에 대한 처리 결과 통보) <u>법 제8조의2제</u> <u>2항제4호</u> 및 제22조에 따라 해 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받 은 해당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소속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 은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통 보해야 한다.	제15조(징계의결요구 등에 대한 처리 결과 통보) <u>법 제8조의2제</u> <u>2항제4호, 제14조의5제11항</u> 및 ----- ----- ----- ----- -----.
제16조(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등)	제16조(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이 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2조의2 에서 “정부윤리위원회”라 한다)	① ----- ----- ----- ----- -----

의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
은 법 제9조제3항 본문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
촉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③ (생 략)

제19조(정부윤리위원회의 회의
등) ① (생 략)

② 정부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재
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2. (생 략)

----- 9명의 위원
은 다음 각 호-----
-----.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5
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
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
상 근무한 사람

3. 사회적 신망이 높고 인사·
윤리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4. 시만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
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
천한 사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정부윤리위원회의 회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 4. (생 략)

③ 삭 제

④ · ⑤ (생 략)

제24조(재산공개대상자) ① 삭 제

② (생 략)

③ 법 제10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등록재산을 공개하는 정부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신 설>

2. · 3. (생 략)

④ · ⑤ (생 략)

<신 설>

3. 법 제14조의5제11항에 따른 조치

4. · 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24조(재산공개대상자)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현행과 같음)

2. 대통령경호처 차장

3. · 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27조의6 ① 공개대상자등이 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라 심사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등록기관의 장을 거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의 부 · 처 · 청 소속 공무원과 감사원 ·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으로서 법 제10조제1

	<u>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하는 공직자는 소속기관의 장을,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으로서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하는 공직자는 그 공직유관단체를 감독하는 부·처·청을 거쳐 인사혁신처에 제출하여야 한다.</u>
<u><신 설></u>	<u>②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u>
제36조(연차보고서 작성 등) ① 법 제20조의2에 따른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에 재산등록·선물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및 <u>행위제한</u> 등에 관한 현황과 운영실태 2. ~ 4. (생략)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관의 장과 법 제8조제11항에	제36조(연차보고서 작성 등) ① - ----- ----- -----. 1. ----- ----- ----- <u>행위제한,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의 관리</u> ----- 2. ~ 4. (현행과 같음) ② ----- -----

따라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제1항의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전년도의 <u>재산등 록 및 선물신고</u>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및 행 위제한 등에 관한 운영실태와 활동사항 등을 관할 공직자윤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에 관하여는 제8조 단 서를 준용한다.	----- ----- ----- ----- <u>재산등</u> <u>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u>, --- ----- -----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윤리정책과	
연 락 처	044-201-8452